

시행 2년째 접어든 임원 보수 공시제

# 임원 보수 공개는 기업 신뢰도 상승 지름길

공시대상 늘리고 공개항목 세분화해 적정성 평가 가능토록 해야



상장기업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려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자** 본시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시되고 있다. 이전에는 임원 전체에 지급된 보수 총액과 임원 1인당 보수 평균액만 공시했는데 성과와 보수의 연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로 바뀌었다. 작년도 사업보고서는 보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올해 2월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의 산정근거, 항목, 산출과정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후 공시된 자료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보수 유형별로 그 액수와 산정근거가 이전보다 상세히 공시되고 있다. 올해 상장사 임원 보수가 공시되자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 수준 및 임원과 직원 간의 보수 격차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규모와 실적,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역과 책임, 임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액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임원별로 경영실적과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수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보수 공개는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노사갈등을 야기하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상장사에는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공시의 공익적 근거가 있고, 보수 공시는 경영진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또 상장폐지 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적자 기업에 한해 보수의 개별공시를 요구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수 공시는 임원의 회사 재산 유용이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부실기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 공시 대상 확대해 시장 감시 강화해야

보수 공시 대상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 이사와 감사이므로 미등기임원이나 집행임원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기업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가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고려해 보수공개 대상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미등기임원에게까지 확장하자는 입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미국의 경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임원을 포함해 연봉 상위 5인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여행경비, 경호비용 등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 보수를 받는 일정 범위의 미등기임원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시 내역은 연봉·상여·주식·기타 보상의 내역을 세분화하고, 기업의 주가나 성과 지표를 그래프나 도표로 함께 표시해 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상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그런데 보수의 적정성은 이사마다 실제 기여도에 상응해 평가돼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전체 보수 한도 승인이 있다고 하여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이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특히 지배주주가 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은 다른 주주들의 이익배당 참여권을 침해하는 이해상충 행위이므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사후심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이나 독립적인 보상위원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보수액을 다투는 자가 부당지급 내지 과다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임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 구조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와 임원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적에 연동하는 장기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수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송창현**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석사(L.L.M.), 미국 UC버클리 법과대학원 법학박사(J.S.D.),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M&A·기업소송·정부규제)